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11.(수) 17시

식약처-관세청, 자가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허용

-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·구매한 의약품 '6병(3개월 복용량)' 허용
-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을 허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 기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개인**이 **자가 치료용 의약품**을 **국내**로 **휴대**하여 **반입**하는 경우 **세관**에서 **통관 보류**되는 **국민 불편사항**을 **해소**하기 위해 **관세청**과 **협의**하여 내일(11월 12일)부터 **개인 휴대 반입**을 **허용**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.

식약처와 **관세청**은 **국내** 또는 **해외**에서 **정상적**으로 **처방·구매**한 **의약품**임에도 불구하고, **입국 시 개인**이 **휴대 반입**하는 **의약품**의 **통관**이 **보류**되어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**개선 방안**을 **논의**해 왔다.

이에 11월 12일부터는 **해당 국가**의 **정상 의료체계**에 따라 **의약품 규제기관**으로부터 **정식 허가받은 의약품**을 **처방·구매**한 **경우**에는 **'총 6병(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*)'**까지 **개인 휴대 반입**이 **가능**하도록 **조치**하였다.

* (예시) 1주에 1회,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-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, 3개월 복용량은 12개

<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 주요 유형>

▲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휴대 출국 후 국내 휴대 반입하는 경우

▲외국인·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 휴대 반입하는 경우

▲해외 여행시 처방·구매한 의약품을 국내 휴대 반입하는 경우

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**해소**하도록 지속적으로 **협력**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 호 (043-719-2651)
		담당자	사무관	강원구 (043-719-2652)
담당 부서	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	책임자	과 장	김승민 (042-481-78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진우 (042-481-7831)







